

제351회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6월15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정치발전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상정된 안건

2. 정치발전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1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9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특위가 작년 7월 6일 구성된 이후에 한 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서 오는 6월 말까지 활동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가까운 특위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포함, 연중 상시 국회 운영,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 국회운영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라든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민방위기본법 등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성과를 나름대로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개헌과도 직접연계가 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

도 논의가 지속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오늘 회의 진행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6일 제8차 전체회의 이후에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중간보고 형식으로 듣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순서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2. 정치발전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14시10분)

○위원장 **이명수** 의사일정 제1항은 해당되는 위원께서 아직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 정치발전과제에 관한 논의를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승희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는 제7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로 구성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세 차례에 걸쳐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 순위를 의무화하고, 사전투표·분투표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부적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제재 규정이 없는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이동약자들이 투표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반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동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표소 외에도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장애인 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운소하 위원 등 위원님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다른 공직선거후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치 신인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최근 기초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 지방선거와 같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후원회 허용 시 금권선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유승희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제2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李憲昇**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승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제도 개선 방안,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조정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충실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이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가 위원회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분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의안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소위원회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 및 폐이고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보다 내실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의원이 법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자율적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조정 시 체계·자구심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의 임명동의안 제출 시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분야와 정책 분야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의안 심사를 보다 효율화·충실화하기 위하여 본회의 처리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자료를 본회의 이전에 의원실에 사전적

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질서문란행위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현승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각 소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신 대로 1·2 각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 함께 의견이 합치되어 의결이 된 사항이 있고, 계속 검토 논의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을 드린 1·2 소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따로 미리 정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특별한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활동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해 주셔서 아마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미 들으신 대로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법제화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비례대표국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신 추천 비율, 순서를 의무화한 것 또 노인하고 장애인의 투표를 보다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은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선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운영이나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 위원님.

○유승희 위원 우리 제1소위에서 지금 회부한 의견에 대해서 가결해 주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정치자금법 및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정당의 다름을 이유로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거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선거법 내지는 정치자금법 등 정당 관련 법, 이렇게 광범위한 선거 관계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1소위에서 최근에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은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를 둘 수는 있으나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후원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후보자로 출마를 했거나 또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하는 소송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다, 합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것이 합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권자가 결정할 국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논의했던 지정권자의 확대에 있어서는 기초·광역까지 포함해서 지방의회 의원, 지금 전혀 후원회를 둘 수가 없고 또한 예비후보자, 본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 시절에도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치 신인이라든지 또 출마하기에 충분한 재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후원 모금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법 행위자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국회의원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허용하는 범위와 같은 지정권자 확대에 대한 안을 내놓았습니까라는 아까 발표한 것과 같이 다소 이견들이 있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정치발전특위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1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한 번 연장을 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활동을 못 했고요. 특히 지난 대선 기간 등 이런 정치일정 때문에—다른 특위도 마찬가지로—합시다만—활동을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의견이신가요?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1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논의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발전특위로서의 본래적 의미에서 본다면 공직선거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를 확대하자, 여기에 대한 의결 과정을 거쳐서 이곳 전체 회의에 상정됐더라면 이 의결의 과정이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소위에서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헌,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 취지 그 부분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같이 좀 논의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원 취지를……

의결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서로 성급하게, 의견의 교환들이 차단되어 버렸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서로 더 의견을 충분히 나누면 충분히 본뜻을, 아마 전희경 위원님도 그 뜻을 살려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이제 금방 1소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 투표율 제고 부분하고 국고보조금 배분과 지급방식 개선은 아주 민감하고 철저하게 지금 바꿔 줘야 될 문제고요. 피선거권자 연령 하향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소하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경 위원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정치발전의 여망을 담은 여러 의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발전특위는 특위 전체위원회 또 소위 그 자체의 어떤 과정 과정들도 정치발전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 내용, 형식, 모두에 있어서. 그런데 지난 소위의 논의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예비후보자,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후원회를 두지 못하게 한 현행 법령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부랴부랴 소위원회가 열리는 그 회의석상에서 파악을 하는 기초적인 그런 회의 준비의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입법권자의 재량의 여지에 속한다라는 것은 입법권자들이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요청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저 그냥 의결을 하고 못 하고 이런 문제로 흘러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발전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요.

단지 그 논의 과정에 있어서 그 논의의 과정도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다른 기타 상임위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해야 될 의무도 저희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소위원회 논의사항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됐다고 그래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논의 자체가 그다음 또 어떤 다른 진전을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말씀을 더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저도 공직선거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1소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다 잘 알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에서 합헌으로 판결이 난 사항이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공직선거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2소위에서도 그동안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운영제도 개선이라든지 국회의원 권한 개혁, 이 중에서 저희들 몇 가지만 조금 논의가 됐는데 사실 의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참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한을 연장을 해서 하는 운영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2소위의 논의사항을 보더라도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재호 위원 야당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 대체로 그동안 활동 사항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긴 합니다만, 시간적인 제약에 갇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논의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 저도 1소위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어떤 법안 내용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갖는 거야 각자가 헌법기관이니까, 각자의 권리사항이니까 그 찬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방선거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우리가 양보를 해도 1년 전쯤 되면 대체적인 물은 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후원회 제도도 예를 들면 지방의회 나가시는 분들이나 또 단체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당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도 그 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결정하는 거라고 하면 빨리 논의를 마무리 지어 주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고, 어쨌든 그게 잘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정치발전특위에서 정리를 신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치발전특위가 논의만 하고 입법권도 없고, 행정위에 넘기고 또 법사위에 가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위가 문자 그대로 정당 간에 정치적 타협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위원 구성도 했으면 좋겠고 또 법안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이 특위에 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지방선거 1년 앞두고 또 이게 입법권도 없이 연장이 된들, 법안 제출권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끌면—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은 지금 현 우리 정치발전특위 의견으로 각 당 지도부에게 또는 국회 지도부에게 요청을 드려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지금 말씀하신 이철희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지금 특위의 기능, 역할에 대한 말씀까지 각 당 지도부와 의장단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 병 원 박 덕 흠 박 용 진 박 재 호
송 옥 주 유 승 희 윤 소 하 이 명 수
이 철 희 이 태 규 이 현 승 전 희 경

○청가 위원(2인)

원 혜 영 정 인 화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천 우 정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황주홍	정인화	국민의당	2017. 3. 17.